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40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김현정 · 정일영 · 강준현
이훈기 · 양부남 · 손명수
박홍배 · 민병덕 · 송영길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해당 자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라는 대원칙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중 하나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임.

모회사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복상장을 통해 신규 자금 출자 없이도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익을 얻

는 모회사의 지배주주와 달리, 주식 가치 희석에 따른 피해를 부담하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다른 의무배정 기준과의 정합성 및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모회사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 설립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 당시의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모집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된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분할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5조의18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배정을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발행
하기로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 설립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 신설법인”이라고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해당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 당시의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모집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된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 10. (생략) <u><신 설></u> 11. ~ 25. (생략)	<u>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분할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 ----- ----- ----- ----- ----- -----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배정을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u> 11. ~ 25. (현행과 같음)
---	--